**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**

**∘ 인사규정**

 **제10조(결격사유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
 2. 미성년자·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 3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 4.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5.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 6.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

 7. 「부패방지 및 국민국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자( 2018.11.23.)

 8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함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(신설 2019. 8. 1.)

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
 나.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
 11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12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 [전문개정 2022. 8. 25.]

**∘ 공무직 인사관리규정**

 **제11조(결격사유)** 공무직 채용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“제10조”에 따른다.

**∘ 임시직원 관리규정**

 **제8조(결격사유)** 임시직원 채용의 결격사유는 서울특별시관악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“제10조”에 따른다.